

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상륙거부조치 실시 중, 특별한 사정에 의해 재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

2020년 7월 29일 현재

법무대신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추세에 주목해 일정기간 동안 특정 국가 혹은 지역이 체류한 이력을 가진 외국인 등에 대해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5조 제1항 제14 호에 의거, 상륙 거부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 상륙거부 대상지로 발표되기 전 해당 국가 혹은 지역으로 재입국허가(유사 재입국허가 포함)를 이용해 출국한 외국인, 즉 '영주권자' '일본인 배우자 등' 혹은 '정착자' (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본인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, 일본인 혹은 영주권자의 아이도 포함)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재입국을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와 함께 개인 사정이기는 하지만 특히 인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의 경우 재입국 허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.

개인 사정에 의해 재입국·입국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.

- 1 체류국가·지역이 상륙거부 대상지가 되기 전 재입국허가(유사 재입국허가도 포함)를 이용해 출국한 외국인
 - 가족이 일본에 체류하고 있어 현재 이산가족 상태에 있을 경우.
 - 보호자와 함께 일본에서 생활하며, 일본의 교육기관에 적을 두고 있는 아이가 보호자와 함께 출국해 통학할 수 없게 된 경우 (동행하는 보호자도 포함).
 - 일본에서 초·중등교육을 받은 아동·학생이 계속해서 동일한 교육기관에서 초·중등교육을 받기 위해 재입국할 필요가 있는 경우.
 - 일본 의료기관에서 수술 등 치료 (혹은 재검사 포함) 나 출산을 위해 일본으로 재입국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.
 - 외국에 있는 중증 상태의 친족을 병문안하거나 사망으로 인해 장례식에 참석해야 할 사정 혹은 필요가 있었던 경우.
 -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수술 등 치료 (혹은 재검사를 포함) 나 출산을 위해 출국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.
 - 재판의 증인 등 외국의 재판장에 출석해야 할 필요가 있어 출국한 경우.
- 2 체류국·지역이 상륙거부 대상지역이 된 후 해당지역으로 재입국허가 (유사 재입국허가 포함) 를 이용해 출국한 외국인 (향후 일본에서 해당국가 혹은 지역으로 출국 예정인 경우도 포함)
 - 외국에 있는 중증 상태의 친족을 병문안하거나 사망으로 인해 장례식에 참석해야 할 사정으로 출국한 경우.
 -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수술 등 치료 (혹은 재검사를 포함) 나 출산을 위해 출국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.
 - 재판의 증인 등 외국의 재판장에 출석해야 할 필요가 있어 출국한 경우.
- 일본에서 초·중등교육을 받던 아동·학생이 모국 등에서의 진학을 목적으로 입시 시험을 치르기 위해 출국했다가, 졸업을 위해 다시 일본의 동일 교육기관에서 초·중등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 재입국해야 하는 경우 (동반하는 보호자 포함).
- 3 신규입국하는 외국인
 - 일본인·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
 - 정착자의 배우자 혹은 자녀로 일본에 가족이 체류하고 있어 현재 이산가족 상태에 있는 경우.